

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권*

-하버마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양 해림(충남대)

한글 요약

세계시민주의의 개념과 역사는 정치사상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세계시민주의의 기원은 B.C. 4-5세기 사이에 고대 그리스의 키니코스(Cynicos)학파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시민주의는 오랜 고대 그리스시대에 고안된 용어이지만, 오늘날에도 잘 어울리는 개념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세계시민주의는 최근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독일, 프랑스 유럽에서 다양한 철학자,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는 주제이다. 지금 우리는 지구촌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지구촌 세계를 살아가면서 종족 민족적, 종교적 전통을 살아가며 넘나드는 교류 속에서 활기차게 세계의 상식을 창조하고, 타자의 다른을 인정하도록 정신을 일깨우고, 일면적 관점에서 세계시민적 시야로 지평을 전환할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요구받고 있다. 세계시민적 관점이란 문화적 타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거기서 각 개인의 생존이해를 결합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세계시민주의는 유럽 근대성의 위대한 이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종족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신자유주의라는 역사적으로 마모(磨耗)된 것을 뛰어넘는 것을 뜻한다.

하버마스는 상호공존이라는 보편주의적 원칙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화주의적, 입헌 애국주의적 자기이해' 토대를 둔 '통일된 유럽국가'의 수립을 강조한다. 의사소통에 의한 합리적 동의를 묵시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입헌적 애국주의는 하버마스에게 있어 새로운 세계시민적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의 기반이다.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국제법이 헌법화됨으로써 스스로를 넘어 세계시민권으로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전통적인 국제법은 "상호관계 속에 놓여 있는

* 이 논문은 2014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해외파견교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국가들과 연관되어 있는 반면, 세계시민권은 인간들이 “보편적인 인간국가의 시민들로 간주될 수 있는 한 인간들 사이의 법적 관계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하버마스는 200년 전 칸트에 의해 이루어졌던 고전적 국제법의 질서가 새로운 세계시민적 질서로 변형될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었다고 본다. 거기서 칸트는 그 구성원이 입헌적 공화국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필자는 세계시민주의 기원 및 개념, 세계시민주의와 헌법애국주의, 세계시민권: 국가적 구상과 민주주의적 구상, 세계시민권: 정치적 세계질서와 세계시민권, 세계정부 없는 세계 내 정책: 세계시민적 상태 등을 살펴 볼 것이다.

주제어: 세계시민주의, 세계시민권, 하버마스, 칸트, 헌법애국주의, 세계공화국

1. 들어가는 말

세계시민주의는 최근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독일, 프랑스 유럽에서 다양한 철학자,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는 주제이다. 주지하듯이, 지금 우리는 지구촌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지구촌 세계를 살아가면서 종족 민족적, 종교적 전통을 살아가며 넘나드는 교류 속에서 활기차게 세계의 상식을 창조하고, 타자의 다름을 인정하도록 정신을 일깨우고, 일면적 관점에서 세계시민적 시야로 지평을 전환할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요구받고 있다. 세계시민적 관점이란 문화적 타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거기서 각 개인의 생존이해를 결합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세계시민주의는 유럽 근대성의 위대한 이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종족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신자유주의라는 역사적으로 마모(磨耗)된 것을 뛰어넘는 것을 뜻한다.¹⁾ 칸트적 세계시민주의의 프로젝트가 지속될 수 있으려면, 미국이 지난 1918년과 1945년 이후 포용했던 국제주의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국제법이 세계시민적 상태로 발전하는 노정에서 다시금 선도자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²⁾ 무엇보다 칸트는 국제국가나 세계정부가 아니라 세계시민적 상태 또는 국제연맹을 추구한다. 그 이유는 각 국가나 민족이 자신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모든 국가나 민족을 포괄하는 하나의 세계정

1) Ulrich Beck, *Power in the Global Age: A new political economy*, trans. by Kathleen Cross, Cambridge: Polity Press, 2005, p.280.

2) Jürgen Habermas, "Hat die konstitutionalisierung des Völkerrechts noch eine Chance", *Der gespaltene Westen*, Frankfurt. a. M. 2004. p.116.

부가 아니라 각 국가가 연합을 이루는 세계시민적 상태나 국제 연맹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³⁾

세계시민주의는 좌우를 막론하고 종족중심주의와 민족주의를 처방하는 해독제이며 지구화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시민의 상호소통의 새로운 공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자각적 인식이다. 우리는 국가나 지역에 귀속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구촌의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며 세계시민의식으로 지구촌의 공론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오늘날 글로벌 시대에 풀어야 할 과제이다. 하버마스 (Jürgen Habermas)는 지난 2001년 9·11테러가 '고전적 국제법의 질서'를 새로운 세계시민주의적 질서'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지고 있다고 주장한다.⁴⁾ 하버마스는 상호공존이라는 보편주의적 원칙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화주의적, 입헌 애국주의적 자기이해에 토대를 둔 '통일된 유럽국가'의 수립을 주장한다.⁵⁾ 입헌적 애국주의에서 헌법의 충실향 준수는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 참여한다는 점을 입증해 준다. 하버마스에게서 이러한 보편적 권리는 인간들의 공존조건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하버마스에게 있어서 입헌적 애국주의는 의사소통에 의한 합리적 동의를 목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시민적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의 기반이 된다.⁶⁾ 이러한 정치이론의 세계에서 세계시민주의가 헌법애국주의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권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세계시민주의 기원 및 개념, 세계시민주의와 헌법애국주의, 세계시민권: 정치적 세계질서와 세계시민권, 세계시민권: 국가적 구상과 민주주의적 구상, 세계정부 없는 세계 내 정책: 세계시민법 등을 차례로 고찰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필자는 지구화의 새로운 긍정적 전망에 의해 지구촌을 하나의 삶의 터전이자 공생의 장으로 인식하여 행동하는 세계시민주의를 발견하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 활동하라"는 명제를 통해 글로벌 사회의 행동규범을 이루어 세계시민주의의 위대한 정치가 발견되고 활성화되는 과정을 밝혀내고자 한다.

3) I. Kant, "Toward Perpetual Peace", *Practical Philosophy*, trans. and edited by M. J. Gregor, Cambridge University, 1996, pp.328-330 참조.

4) 지오반나 보라도리, 『테러시대의 철학 - 하버마스 데리다와의 대담-』, 손칠성외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4, p.102.

5) Jürgen Habermas, *Nachholende Revolution*, Frankfurt. a. M 1990, p.217.

6) 지오반나 보라도리, 앞의 책, p.103.

2. 세계시민주의의 출발점

세계시민주의의 개념과 역사는 정치사상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세계시민주의의 기원은 B.C. 4~5세기 사이에 고대 그리스의 키니코스(Cynicos: 견유犬儒)학파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시민주의는 오랜 고대 그리스시대에 고안된 용어이지만, 오늘날에도 잘 어울리는 개념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세계시민주의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키케로, 세네카,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스토아(Sto)학파와 근대 칸트의 계몽주의에 기원을 두고 있다. 특히 근대시민주의는 볼테르와 칸트, 프랑스인권 선언등에 나타난 계몽주의 사상을 수용하여 이론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근대 국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⁷⁾ 최근에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계몽주의 계획을 충족하는 세계시민적 연대의 형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⁸⁾

세계시민주의의 어원은 그리스어 코스무 폴리테스(Kosmou Polities)라는 개념에서 나왔다. 이 개념의 그리스어는 코스모스, 즉 세계의 시민을 의미한다. 폴리테스, 이를테면 시민은 스스로 충성을 맹세한 특정한 폴리스(polis)에 속해 있다. 그 당시 코스모스는 지구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주라는 뜻에서 세계를 지칭했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시민주의는 본래 모든 시민들이 여러 공동체 가운데 한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점을 거부한다. 세계시민주의는 스토아학파에 의해 점차 수용되고 발전된다. 스토아학파는 세계시민(Kosmopolities)의 관념을 발전시켜 두 개의 공동체, 지역공동체와 중앙정부의 공동체를 뜻했다. 정치철학자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이 지적하고 있듯이, “스토아학파에서 세계시민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삶의 커다란 풍요로움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지방적 귀속 의식(local identification)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스토아학파에서도 세계시민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동료 도시 주민을 “보다 좋아하게끔 만드는 것을” 우리의 과제에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세계시민주의의 발전은 이전과 구별되어 왔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라는 세계시민주의의 확신이 바울의 주장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노예이거나 자유인이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당시 스토아학파에서 세계시민이

⁷⁾ K. A. Appiah, 『세계시민주의』, 실천철학연구회 옮김, 바이북스, 2008, pp.19–21.

⁸⁾ Robert Fine and Will Smith, "Jürgen Habermas's Theory of Cosmopolitanism", *Constellations* vol. 10. No. 4. 2003, p.470.

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삶의 커다란 풍요로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지방적 귀속 의식들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를 세계시민으로 칭한 첫 번째 인물은 견유(犬儒)학자 디오게네스였다. 디오게네스가 “나는 세계시민이다”라고 답변했을 때, 그가 인습적인 그리스 남자들의 자화상에서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적 출신과 소속 집단에 따라 자신을 규정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있었음을 의미한다.⁹⁾ 이렇게 키니코스학파는 세계시민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 표현은 역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관습과 전통에 대한 키니코스학파의 회의주의가 반영되어 있다. 디오게네스는 근대적인 우리와 남을 의미하는 그리스인(헬레나)과 야만인 사이의 구별을 논박했다. 그는 우리와 남을 대립시키는 것을 단순하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한다. 그는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성에서 세계시민주의를 포착한다. 우리가 남들이라는 당시 통용되던 대립명제를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리스인들의 이동성이다. 즉, 세계주민주의가 그리스인들이 야만성과 뒤섞인 것이다.¹⁰⁾

이와 같이 세계시민이라는 구상은 그리스 시대에 통용되었던 구별의 논리에 일대 혁명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와 타자간의 구별은 더 이상 존재론적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고 어떤 절대적인 배제에 대해 규정하거나 확정짓지도 않는다. 또한 밖으로 배제하는 구별의 사고방식이 안으로 끌어들이는 구별의 사고방식으로 대체된다. 타자나 이방인은 동등성이라는 지평 위에서 그 차이를 상실하기도 하고 얻어내기도 한다. 따라서 세계시민주의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와 타자’의 구별이 없어지는 동시에 모두에게 이중적 바람이 구상됨으로써 그 구별이 새로워진다는 것이다.¹¹⁾

이러한 세계시민주의는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를 필요로 한다. 먼저 세계화는 여러 과정을 묘사하는 데서 적용되어 왔다. 세계화는 지금까지 인간이 행해 왔던 활동이다. 세계화는 생물학적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또한 세계화는 경제적 과정, 즉 19세기 일부 시작되었고 15세기부터 중요한 경제적 과정을 일컬어 왔다. 오늘날의 세계화는 주로 우리가 정보로 연결된 네트워크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9) 마사 너스봄,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논쟁』, 삼인, 2003, p.28.

10) 울리히 베, 『세계화시대의 권력과 대항권력』, 홍찬숙 옮김, 길, 2011, p.78.

11) 울리히 베, 앞의 책, p.79.

사실을 가리킨다. 즉 세계화는 경제적 및 정보의 상호 연관성, 그리고 생물학적 상호연관성이 증가해 가고 있는 모든 전개과정을 일컫는다. 생물학적 상호연관성이란 예컨대 종종 중국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하게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독감 바이러스에서 찾을 수 있는 연관성을 뜻한다.¹²⁾ 이때 세계화는 오늘날 현실을 이루는 근간이 된다. 이 사실에 대응할 말이 바로 세계시민 주의인 것이다. 그래서 세계시민주의를 통해 세계화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우리에게 주어졌다.

세계시민주의는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과 국제연맹 개념을 제안하면서 확산되어 나갔다. 먼저 세계시민주의는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영구평화론』(1795)의 글을 포함한 계몽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수용하면서 발달하였다. 하버마스는 200년 전(前) 칸트에 의해 구상되어졌던 고전적 국제법의 질서가 새로운 세계시민적 질서로 변형될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여기서 칸트는 그 구성원이 입헌적 공화국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개별 국가는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 다른 국가들에게 그들이 자기 국가와 더불어 각 국가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시민적 입헌 조직과 유사한 입헌 조직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만민의 연합체'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¹³⁾

하버마스는 칸트가 요구한 시민사회와 국제적 공동체의 공존적 일치를 통해 국가들 사이의 자연상태를 제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버마스는 "세계화의 과정에서 국제법의 '주권'개념에 대한 역할의 변화, 그리고 계몽주의의 핵심개념이었던 "세계시민주의"는 아직도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견지한다. 먼저 하버마스는 세계시민적 차원에서 교전 당사국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다. 거기서 그는 국제법을 통해 특정한 이해가 보편주의라는 가면으로 은폐

12) 세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김경원·임현진,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출판, 1997; 박길성, 『세계화:자본과 문화의 구조변동』, 사회비평사, 1996; 성염외, 『세계화의 철학적 기초』, 철학과 현실사, 1999; 안병영·임혁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 2000; 임홍빈, 『세계화의 철학적 기초』, 문예출판사, 2002; 한스 페터 마르틴·하랄트 슈만, 『세계화의 뒷』, 강수돌 옮김, 영림 카디널, 2006; 사회와 철학연구회편, 『세계화와 자아 정체성』, 이학사, 2001.

13) Immanuel Kant, *Zum ewigen Frieden*, Frankfurt a. M. 1977, B30.

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장기간에 걸친 고전적 국제법을 칸트적인 의미에서 “세계시민국가”와 같은 방향으로 전환시키고자 했다. 그는 칸트의 제안이외에 다른 의미 있는 대안은 없다고 단언한다.¹⁴⁾

또한 독일의 볼테르라 불렀던 크리스토프 빌란트(Christoph M. Wieland, 1733–1813)는 1788년의 논문에서 세계시민주의의 이상을 다음과 같이 특징적으로 표현했다: “세계시민들은 지구의 모든 사람을 단일한 기계의 자손들로 간주하고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간주한다. 다른 수많은 합리적 존재와 더불어 세계시민들은 한 국가의 시민들로서 자연의 일반법칙에 따라 전체의 완전성을 함께 도모하면서 각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복지에 몰두한다.”¹⁵⁾ 볼테르(Valtaire, 1694–1778)는 “유럽 무역상들, 이 교역로를 발견한 이래로 이민족들의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땅에서 나는 생산물을 먹고, 그들이 짠 옷을 입고, 그들이 즐기고, 심지어 그들의 오래된 도덕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면서도, 왜 우리는 그 민족들의 정신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가?”¹⁶⁾ 이러한 세계시민주의의 개념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중첩되어 있다. 하나는 우리에게 타인에 대한 의무, 즉 혈족의 유대나 형식적인 시민의 유대를 더욱 확산한 의무가 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보편적인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특수한 삶의 가치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삶에 의무를 부여하는 관행과 믿음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철학자들은 국경을 설정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당하지 못한 역사적 사건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와 스탈린(Iosif Stalin, 1878–1953)은 “뿌리 없는 세계시민주의자들”에 대해 지독한 독설을 펴부었다. 그들은 반세계시민주의를 단지 반유대주의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인류에 대한 충성을 배제하고, 인류의 한 부분, 즉 자신의 민족과 계급에 대한 충성심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시민주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 즉 아무리 자신의 지역에서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인간 각자가 서로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우리는 모든 외국인들을 저버리는 민족주의자를 편들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친구나 동료 시민들을 냉담하고 불공평하게 대

14) 지오반나 보라도리, 앞의 책, p.83.

15) Christoph Martin Wieland, "Das Geheimniß des kos mopolitienordens," *Deutscher Merkur*, August 1788, p.107.

16) Valtaire, *Essai sur les moeurs et l'esprit des nations*, vol.16, 1784, p.241.

우하는 극단적인 세계시민주의를 편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3. 헌법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

앞서 살펴본 세계시민주의는 헌법애국주의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먼저 헌법 애국주의란 용어¹⁷⁾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는 독일 정치학자인 슈테른베르거(Dolf Sternberger)였다.¹⁸⁾ 즉, 1970년 슈테른베르거는 “헌법애국주의(Verfassungspatriotismus)”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는 이런 입장은 “국가를 형성하는 우애(state friendship)”라는 모호한 개념 아래 “열정적인 합리성(passionate rationality)”으로 정당화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시민들은 자신을 민주적 국가와 동일시하며, 이런 자기와 동일시되는 민주적 국가를 적으로부터 방어한다. 그 기원은 앤스퍼스의 『독일 책임 문제Die Schuldfrage: Ein Beitrag zur deutschen Frage』(1946)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책에서 앤스퍼스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잔인하고 정당하지 못한 정치적 정체를 가진 사람들의 정치적 유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단 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¹⁹⁾ 앤스퍼스의 이런 입장은 돌프 슈테른베르거와 하버마스가 뒤를 이었다. 베테른베르크가 이런 입장을 제시한 이유는 전후 루돌프 스멘트(Rudolf Smend)와 벌인 사회통합과 법의 관계에 대한 논쟁 때문이었다. 지난 1958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에 각인된 법질서에 스며들어 있다는 입장을 선언하면서 민주주의의 적(敵)에 대항해 민주적 헌법 질서를 객관적 원칙들의 수호자로 나섰다. 이런 인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유일한 정체가 바로 민주주의다. 그는 이런 발상을 독일의 정치

17) 헌법 애국주의에 대한 기원은 Jan-Werner Müller, *Constitutional Patriot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제1장을 참고. 이 장은 “On the Origins of Constitutional Patriotism”이란 제목으로 Igor Primoratz & Aleksandra Pavković, eds, *Patriotism: Philosophic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Hampshire: Ashgate, 2007) 참조.

18) 개념과 실천의 관계에 대해서는, Max Horkheimer, “Traditional and Critical Theory,” in *Critical Theory: Selected Essays* (New York: Continuum, 2002), pp.188–243 참조.

19) Müller, *Constitutional Patriotism*, p. 16 Karl Jaspers, *The Question of German Guilt, Perspectives in Continental Philosophy* No. 16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00), pp.34–36, p.72.

문화, 전통, 관습이 아닌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아렌트(Hannah Arendt)로 이어지는 공화주의의 전통²⁰⁾에서 발견해 냈다.

하지만 슈테른베르거의 발상은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같은 공화주의 시민의 덕 보다는 국가에 대한 소속 의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가 제시한 “헌법의 친구(friends of the Constitution)”란 개념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헌법의 친구란 “헌법의 적”에게는 공격적이고 적대적이란 의미다. 슈테른베르거의 헌법애국주의는 처음부터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었지만, 그 대상이 동독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애국주의의 종족성(ethnicity)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런 종족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하버마스의 헌법 애국주이다. 하버마스가 이 개념을 발전시키게 된 계기는 1986년에 있었던 “역사가의 논쟁(historian's dispute)”에서였다. 하버마스는 수많은 보수 역사가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국가의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그래서 그는 독일인의 정체성을 일반화 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며 오직 헌법애국주의만이 서독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적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하버마스는 시민들이 탈인습적(postconventional) 관점에 “자신의 욕망과 인습화된 사회적 경험을 버리고 가능한 한 공정한 관점을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버마스가 말하는 “탈인습의 핵심은 “정체성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라 할 수 있다. 하버마스는 이런 비판적 반성을 공공장에서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합리적 의사소통의 정체성을 합리화시킨다는 의미로서 헌법애국주의가 국가의 경계를 넘어 민주적 보편 가치를 수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하버마스는 근대 사회 정치생활에서 전통적인 종교적 권위의 정당성을 대체한 것이 공화주의 전통에서 비롯하였으며 절대 권력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에서 비롯한 인민주권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실현하려면 민주적 정체성이 존재해야 하며, 근대 사회에서 이런 정체성의 근원이 곧 민족 국가다.

그러나 민족 국가를 이루고 민주적 정체가 들어섰을 경우, 시민들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민주적 삶의 방식이 특수한 전통이나 집단 정체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반성적으로 국가적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버마스는 주장한다. 하버마스는 입헌민주주의 체제에서의 해방개념은 언제나 이미 ‘자율성과 결

20) 아렌트의 공화주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양해림, 「한국사회에서 공화주의의 이념은 부활할 수 있는가?」, 『시대와 철학』, 제19권 1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8, pp.7-46.

합된 자기이해²¹⁾의 과정이라 말한다. 그는 국제정치학에서 의사소통적 자유를 무질서의 수렁으로 빠트리는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한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형태의 통치방식이 전통적 형식의 민주주의적 협력을 저해하는 것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는다.

여기서 그는 국제정치를 더 이상 국민국가의 권력유희로 이해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하버마스는 합의의 새로운 기제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의사소통의 문제해결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국내의 정치문제들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²²⁾ 하버마스의 관점에서 입헌민주주의에서 인민주권은 특정한 전국가적 민족의 정체성 등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또한 각 국가의 고유한 정체성은 그 국가가 지닌 서로 상이한 민주적 헌법의 내용과 절차 속에서 형성된다.²³⁾ 이렇게 헌법애국주의의 기원을 본다면,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것과는 다르게 헌법애국주의는 애초부터 세계시민주의와 공존 가능하다. 우선 헌법애국주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세계시민주의와 친화력을 갖고 있다. 첫째, 헌법애국주의는 집단책임을 폭력과 인종주의라는 잘못된 과거를 극복하고 세계시민의 정신을 불러 일으킨다. 둘째, 헌법애국주의는 군사적 집단화를 경계해야 하며 평화적 애국주의를 이루고자 한다. 셋째, 헌법애국주의는 정치적 입장에서 본 민주적 정치문화와 보편 가치이기 때문에 막연한 감정이나 직관이 아닌 이성의 비판적 판단을 통해 타자의 배제보다는 포용을 목적으로 한다. 애국주의가 국가의 경계를 넘어 민주적 보편 가치를 수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 놓는다.

모리치오 비롤리에 따르면, 하버마스의 헌법애국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땅에 뿌리박고 있는 공화주의적 애국”²⁴⁾의 토대를 방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하버마스는 애국을 전후 독일연방국이 헌법에 구현된 자유와 민족주의의 보편적 진리들에 대한 충성심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 비틀리는 공화주의적 애국주의는 “명백하게 특수주의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²¹⁾ Jürgen Habermas, “was Theorien können und was nicht”, in: *Habermas Verangenheit als Zukunft*. München: Piper, 1993, p.136.

²²⁾ Jürgen Habermas, *Anarche der kommunikativen Freiheit*, Frankfurt. a. M. 2007. p.269.

²³⁾ Jürgen Habermas, “Citizenship and National Identity: Some Reflection on the Future of Europe,” in *Theorizing Citizenship*, ed by Ronald Beiner (Albany: SUNY Press, 1995), p. 260.

²⁴⁾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김경희·김동규 옮김, 인간사랑, 2006, pp.51–52.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속한 공화국의 제도와 생활방식에 대한 열성적 사랑”²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누스바움도 하버마스의 애국주의가 사람들의 감정을 사로잡지 못할 것²⁶⁾이라 비판한다. 위와 같이 하버마스의 헌법애국주의는 그 이면에 칸트의 세계시민권에서 그 토대를 마련했다.

4. 세계시민권: 정치적 세계질서와 세계시민권

칸트는 『영구평화론』²⁷⁾에서 국제법이 헌법화됨으로써 그것을 넘어 세계시민권으로 향해 가야 한다고 말한다. 전통적인 국제법은 “상호관계 속에 놓여 있는 국가들과 연관되어 있는 반면, 세계시민권은 인간들이 ”보편적인 인간국가의 시민들로 간주될 수 있는 한, 인간들 사이의 법적 관계를 표현한다.²⁸⁾ 세계국가를 둘러싼 최근의 철학적 논의의 대부분은 이러한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깊게 관련되어 진행되어 왔다. 고전적 국제법의 규범적 내용은 오직 주권국가, 인구와 영토 그리고 실체적인 정치력이나 경제력 규모의 차이에 관계없이 상대를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하여 동등한 지위로 부여하고자 하는 것을 한정한다.²⁹⁾ 특히 고전적 국제법은 자신의 가정에 따라 국제법의 주체에서 부여된 형식적으로 동등한 지위가 사실상 권리균형에 의해 뒷받침 되었을 경우에만 본래의 안정화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항상 교전 중인 당사자들이 도덕적으로 터부시되는 폭력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암묵적인 합의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한다. 하버마스가 보기에도 칸트는 경험적인 근거를 들어 이런 두 가지 가정에 반대했다.³⁰⁾ 각 개인들은 더 이상 모국(母國)의 시민들일뿐 다른 나라들에 의해 대표되지 않는다. 하버마스의 관점에서 이들은 이제 세계시민으로서 직접 모든 국가들에 대해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이 이념의 핵심은 국가들의 법으로서 국제법을 개인들의 권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25) 모리치오 비롤리, 앞의 책, p.51.

26) 장은주, 『인권의 철학』, 새물결, 2010, p.347.

27) Immanuel Kant, *Zum ewigen Frieden*, Frankfurt a. M. 1977.

28) Immanuel Kant, 앞의 책, p.203.

29) Jürgen Habermas, *Hat die konstitutionalisierung des Völkerrechts noch eine Chance*, p.118.

30) Jürgen Habermas, 위의 책, p.119.

리로서 세계시민권으로 변형시킨 것으로부터 생긴 결과에 놓여 있다. (...) 개인들에게 인정된 인권 및 시민권은 이제 국제관계를 통해서도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거대한 국가체로 연합하는 주권국가들은 자신의 직접적인 지위가 상실되는 값을 치르고 그 시민들에게 세계시민의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³¹⁾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하버마스는 칸트와 마찬가지로 국제법을 개인들의 권리로서 세계시민권으로 변형시키고 그 시민권은 국제관계에서 효력을 발생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국제법의 헌법화를 통해 생겨날 새로운 세계시민권은 각 개별적인 세계시민의 권리인 인권이었다. 이런 점에서 세계시민권을 통해 인권은 인권으로서 법적으로 실현하게 된다.³²⁾ 하버마스는 정치적으로 구성된 세계사회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첫째, 칸트의『영구평화론』은 오늘까지 이념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참조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철학적 및 국제법적 세계국가의 논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어 왔다. 칸트의 이러한 자극은 주권의 관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칸트는 국가들 간의 대외적인 주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포기함으로써 국가들 사이의 주권자체가 의문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하버마스가 보기에도 칸트는 분명하게 국내적 분쟁과 문제에 불간섭의 원칙을 고수하고자 했다. 칸트가 설계한 평화조약의 다섯 번째 예비조항, 즉,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헌법과 통치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³³⁾는 조항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국가의 주권의 제한과 함께 국가의 개별적 성원들이 국제적 평화보장의 진정한 수혜자로서 고유의 국제적 주체로서 주목을 받게 된다. 여기서 국민국가적 주권은 공화주의적 의미에서 민주주권으로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다. 칸트에게서 이것은 동시에 고전적 국제법을 세계시민권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이었다.

둘째, 칸트는 통일적 세계국가의 설립이 이성에 따르는 것이라 주장한다. 하버마스는 자신의 제안이 보다 더 실용적이라고 칸트의 주요한 반론을 다음과 같

31) Jürgen Habermas, *Hat die Konstitutionalisierung des Volkerrechts noch eine Chance?*, p.123.

32) Christoph Menke/Arnd Pollmann, *Philosophie der Menschenrechte zur Einführung*, Hamburg 2007, p.209.

33) Immanuel Kant, 앞의 책, p.199.

이 제기한다.

여러 나라의 국민국가들은 그들 국가의 주권을 상실할 경우, 자신들이 이미 쟁취했던 국가의 독립성을 잃게 되어 제각기 고유한 집단적 삶의 형태의 자율성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세계 공화국의 시민들이 평화와 시민적 자유의 보장을 얻기 위해 국민 국가적으로 조직된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지니는 본질적 자유를 상실하는 값을 치러야 한다는 데 모순이 존재한다.³⁴⁾

위 인용문에서처럼, 칸트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세계공화국의 이념 대신에 동등한 권리를 지닌 주권적 국민국가들의 국제동맹이라는 “부정적 만남”에 대해 언급한다. 이 국제동맹은 초국가적 차원이 아닌 가장 근본적인 국제적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평화보장의 과제를 돌보아야 한다.

셋째, 세계 중앙 국가인가 또는 국제동맹인가? 이것이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유일한 두 가지 대안인가? 칸트의 평화론에 대한 해석자들은 이러한 물음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다. 국가간 차원에서 지역적으로 조직된 제도와 협상체계들이 유럽연합의 모델에 따라 경제나 생태와 같이 국경을 초월한 주요문제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하지만 하버마스는 “정치적으로 구성된 세계 공동체”的 이러한 이념도 세계국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세계기구가 세계중앙 정부의 성격을 모두 지닐 수는 없다. 유엔은 시민과 국가의 정치적인 공동체를 평화의 안전과 인권의 글로벌한 실행을 한정지었다.³⁵⁾ 또한 유엔은 세계경제와 생태문제를 지속적인 협의와 협상체계의 틀 속에서 다루어 왔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포스트 도쿄기후변화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력과 충분히 대표적 협상권한을 갖춘 세계적 차원의 행위주체”³⁶⁾로 나서야 된다. “왜냐하면 세계기구가 오직 평화보장과 인권정책,”³⁷⁾ 그리고 환경과 기후변화라는 삶의 가장 당면한 현실문제들에 한정하여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유엔을 비롯한 세계선진국가들은 전 지구를 휘감고

34) Jürgen Habermas, *Hat die Konstitutionalisierung des Völkerrechts noch eine Chance?*, p.126.

35) Jürgen Habermas, *Zur Verfassung Europas Ein Essay*, Suhrkamp, 2012, p.85.

36) Jürgen Habermas, *Hat die konstitutionalisierung des Völkerrechts noch eine Chance*, p.135.

37) Christoph Menke/Arnd Pollmann, 앞의 책, p.194.

있는 생태학의 문제(리우데자네이루), 인구증가의 문제(카이로), 빈곤문제(코펜하겐), 기후문제(베를린)에 관한 회의에서 현안문제들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 세계정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적 공론장 안에서 당면한 현안문제들은 주요 주제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전에 세계적 공론장의 주목을 끌면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 견해들을 양극화시켰던 최초의 사건은 월남전과 걸프전이었다.³⁸⁾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세계정상들이 산적한 세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호소하여 각 정부들에 대해 적어도 정치적 압력을 발휘하려는 시동을 걸고 있는 사실에 주목한다.

넷째, 이러한 세계 공동체의 구상은 연합적, 보완적인 세계공화국의 이념이다. 칸트적 이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오늘날 현존하는 구조를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권력 분산적 세계사회의 정치적 헌법은 합리적인 근거에서 국가적 성격을 전체적으로 다면적 체계로 해석할 수 있다.³⁹⁾ 이런 이해에 따라 하버마스의 관점에서 개혁된 세계조직은 평화를 수호하고 인권정책을 실행하는 명백히 제한적인 기능을 세계공화국이라는 국가적 성격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계조직은 초국가적 수준에서 효율적이고 선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⁴⁰⁾ 하버마스가 보았을 때, 칸트는 세계공화국이 연방구조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단일성으로 함몰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이러한 두려움의 배후에는 전 세계를 포괄하는 만민국가가 단지 기능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편적 군주국'으로 퇴화하는 내재적 경향을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는 근본적인 반론이 숨겨져 있다.⁴¹⁾ 만약 세계조직의 지배를 제한하지만, 세계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국제법의 효율적인 입현화가 세계시민적 상태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으려면, 어떤 전제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칸트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부터 국민국가들의 주권이 단일한 세계국가의 주권을 통해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국가 동맹의 태두리 안에서 요구하는 수준에서 지양되어야 한다. 회폐(Otfried Höffe)는 평화보장이나 인간 이외에 하버마스의 모델 속에서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다수의 지구적 권리레짐을 통해 조정되는 일련의 소재들을 염두해 두었다.⁴²⁾ 회폐는 이러한 정치적 세계공동체의 연합적이

38) Jürgen Habermas, *Die Einbeziehung des Anderen*, Frankfurt. a. M., 1996, p.205.

39) Otfried Höffe, *Demokratie im Zeitalter der Globalisierung*, München, 2002.

40) Jürgen Habermas, *Hat die konstitutionalisierung des Völkerrechts noch eine Chance*, p.134.

41) Jürgen Habermas, 위의 책, p.127.

42) Otfried Höffe, "Globalität statt Globalismus, über eine subsidiäre und föderale

고 보완적인 성격을 하버마스와 유사하게 “국가간 수평적으로 분할되고, 수직적으로, 즉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초국가적으로 단계화된 책임을 지닌 다차원적 체계로 간주했다.

다섯째, 오늘날 국제정치의 상황은 지난 2001년 9월11일 이후 종종 국제법에 반(反)하는 군사적 갈등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세계국가를 둘러싼 논의는 시기 상조로 간주한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국제법의 헌법화 프로젝트”에 기회가 남아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하버마스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공화주의적으로 구성된 세계공동체에 대해 제기된 물음과 새롭게 씨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⁴³⁾ 칸트가 내세웠던 영구평화는 세계시민적 상태의 이념에 견인력과 직관적 힘을 부여하는 이상이 깃들여져 있다. 이러한 까닭에 칸트는 법이론에 제3의 차원을 도입했다. 이런 점에서 칸트는 국법 및 국제법과 동시에 세계시민의 법을 등장시켰다. 칸트의 이러한 시도는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친 혁신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입장에서 칸트의 인권에 근거한 민주적 입헌국가의 공화제적 질서는 전쟁에 의해 지배되는 국제교류의 국제법적 규제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⁴⁴⁾ 이런 점에서 하버마스는 최근에 미국이 보인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국제정치적 질서관념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가능한 세계질서에 대한 법철학적 준거틀(Bezugsrahmen) 내에서의 위대한 대안적 구상이었다고 강조한다.

5. 세계시민권: 국가적 구상과 민주주의적 구상

앞서 고찰해 보았듯이, 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권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무엇보다 세계시민권은 국가주권을 보장하는 국제법과 그것을 제한하는 인권법 사이의 갈등에서 다양한 특징을 보여 왔다. 예컨대 국제법과 인권법 사이의 갈등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핵폭탄 재앙, 체르노빌의 원자로 재앙,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 폭발 등 각 국가들로 이루어진 세계의 부작용에 방어

Weltpublik", Lutz-Bachmann/Bohman(Hg.), *Weltstaat oder Staatenwelt*, Frankfurt. a. M. p.21.

⁴³⁾ Jürgen Habermas, *Hat die konstitutionalisierung des Völkerrechts noch eine Chance*, Abschnitt III

⁴⁴⁾ Jürgen Habermas, *Die Einbeziehung des Anderen*, Frankfurt. a. M., 1996, p.192.

할 공동체를 결성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먼저 핵무기의 경우도 핵확산을 방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코소보 알바니아 민족의 말살을 저지하기 위해 세르비아에서 나토가 세계경찰로서 개입한 것은 이후의 사실을 볼 수 있는 눈과 의식을 제공했고, 동시에 그 눈과 의식을 예리하게 버렸다. 박해받는 사람들과 민족들을 위해 군사력을 배치하려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로 치부되지 않도록 그 전제조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 세계시민권이다.⁴⁵⁾ 이러한 세계시민권은 인권을 확립하기 위한 요구로 나타난다. 말하자면 인권이 세계시민권으로 확립시키고자 하는 요구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세계시민권은 세계 국가적 조직을 뜻하며, 둘째, 세계시민권은 민주주의의 세계시민적 개방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각각 세계시민권의 “국가적 구상”과 민주주의적 구상“이라 지칭한다.⁴⁶⁾

먼저 세계시민권의 국가적 구상은 세계시민권의 개념을 개별 국가 내부에서 유효한 시민권과 유사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국가의 시민인 것처럼, 세계시민이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시민권을 지니는 것처럼, 세계시민권을 갖고 있다. 개별국가에서 국가시민권이 그렇듯이, 세계시민권은 세계국가에 의해 구속력 있게 제정된다. 그리고 그 세계시민권의 우선권이 선언되면, 효과적으로 관철된다. 따라서 세계시민권은 개별국가에 의해 제한된 지평과 지구적 차원에서 규범적으로 요구수준이 높은 정의(正義)의 체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⁴⁷⁾

세계시민적 민주주의적 구상은 세계시민권의 개념을 국가 내부적인 시민권과의 구조적 유사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의 근본적이고 내재적인 확대로 해석한다. 민주주의는 내적인 논리에 따라 그 개별 국가적으로 제한된 지평을 넘어서 모든 인간을 평등한 세계시민으로 인정받고자 한다.⁴⁸⁾ 어떤 국가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민주적인 이해를 통해 공동체의 자기 통치에 의해 동등한 인간으로서 참여하거나 배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세계시민권의 민주주의적 구상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민주적 공동체의 시민으로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⁴⁹⁾ 그것은 국가시민권과 세계시민권 사이에 잘못된 유혹에 현

45) 울리히 벤, 『세계화시대의 권리와 대항권력』, 홍찬숙 옮김, 길, 2011, p.87.

46) Christoph Menke/Arnd Pollmann, *Philosophie der Menschenrechte zur Einführung*, Hamburg 2007, p.211.

47) Jürgen Habermas, *Hat die konstitutionalisierung des Völkerrechts noch eine Chance*, p.132.

48) Jürgen Habermas, 위의 책, p.132.

혹될 수 있다. 세계시민권의 민주주의적 구상은 이러한 공동체의 자기통제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인간을 배려할 것을 기획한다. 어떤 공동체의 민주적 자기통치 행위는 동일한 공동체의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똑같은 세계의 시민으로서 배려한다. 따라서 우리가 민주적 공동체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모든 구성원들의 시민권과 자신의 영토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세계시민권을 선언하고 존중해야 한다.⁵⁰⁾

이렇게 세계시민권의 두 가지 구상은 인권적 관점에서 개별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 각 국가들 사이의 국제법적 협약의 형태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든 국가에 대한 권리요구를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한다.⁵¹⁾ 세계시민권의 민주주의적 구상은 모든 인간의 전 세계적인 평등이 일정한 민주적 공동체의 성원들의 평등과는 다른 종류의 방식으로 이해한다.⁵²⁾ 세계시민권의 국가적 구상은 보다 광범위한 전 세계적 평등을 허용하는데서 그 장점을 찾을 수 있다. 즉 모든 인간에 대한 동등한 관점이 보다 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세계시민권의 국가적 구상이 동시에 더 많은 요구를 포괄하고 있다.⁵³⁾ 따라서 하버마스에게서 세계시민권의 국가적 구상은 인권을 도덕적 권리로서 이해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이다.⁵⁴⁾ 이에 반해 세계시민적 민주주의적 구상은 그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인 권리로 이해한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시민적 국가적 구상과 세계시민적 민주주의적 구상은 서로 동떨어진 채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한 상호작용 속에서 병립한다.

6. 세계정부 없는 세계 내 정책: 세계시민법

하버마스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성공적인 형태의 유럽 국가에서 실제로 융합되었던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들, 즉 국가성(국가기구), 시민적 연대 그리고 헌법이 국민국가를 넘어서게 되면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 실제생활에서 문화적으

49) Christoph Menke/Arnd Pollmann, 앞의 책, p.213.

50) Christoph Menke/Arnd Pollmann, 앞의 책, p.213

51) Christoph Menke/Arnd Pollmann, 앞의 책, p.213.

52) Christoph Menke/Arnd Pollmann, 앞의 책, p.214.

53) Christoph Menke/Arnd Pollmann, 앞의 책, p.214.

54) Christoph Menke/Arnd Pollmann, 앞의 책, p.213.

로 분열되고 고도로 계층화된 세계사회가 하나의 정치적 헌법을 갖게 된다면, 그 세 요소는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⁵⁵⁾ 칸트는 인간의 자유 법칙에 따라 행하는 자유보장을 영구평화를 향한 의도의 세 가지 본질적 측면, 즉, 국법, 국제법, 세계시민법에 따른 국가 주권에 의해 시민의 자율성을 중재하도록 놓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세계시민법의 핵심은 집단적 국제법 주체를 뛰어넘어 개인적 법 주체에게 자유 평등한 세계시민들의 연합체에 중개되지 않은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⁵⁶⁾ 칸트는 역사가 군사적 폭력에 대해 국제법을 통해 순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침략전쟁에 대한 금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게 했을 때 칸트는 세계시민법을 제정하려는 목표에 보다 근접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⁵⁷⁾ 하버마스는 칸트에서처럼, 오직 세계시민적 상태를 실현하는 것만이 전쟁의 결정적 종식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피통치자의 동의에 기초하고 인류의 결집된 의견을 통해 유지되는 법의 지배다.”⁵⁸⁾

하버마스가 칸트의 이론에서 수용한 “세계정부 없는 세계 내 정책 (Weltinnenpolitik ohne Weltregierung)”의 제목은 세계정부 없는 세계사회와 관련된 것이었다. 하버마스는 세계정부 없는 세계 내 정책의 방향을 극복하려는 개념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정치, 법, 경제, 그리고 문화로부터 점차 증가하는 탈국가의 과정이 불안정하게 진행된다면, 지난 두 세기에 걸쳐 대립해 왔던 민주주의 이론의 상황을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리고 초국가적으로 단계적 책임을 부가하여 다차원적 체계로서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⁹⁾ 즉 하버마스는 세계정책의 탈국가화로부터 이러한 지점에 이르기까지 추적하고자 했다.⁶⁰⁾ 미국이 세계강대국으로 등장한 이후로 세계정책은 세계

⁵⁵⁾ Jürgen Habermas, *Hat die konstitutionalisierung des Völkerrechts noch eine Chance*, p.135.

⁵⁶⁾ Jürgen Habermas, *Die Einbeziehung des Anderen*, p.210.

⁵⁷⁾ Jürgen Habermas, *Hat die konstitutionalisierung des Völkerrechts noch eine Chance*, p.124.

⁵⁸⁾ R. S. Baker(Ed.), *The ublic Papers of Woodrow Wilson*, vol. 1. New York 1925, p.233. Vgl. Jürgen Habermas, *Hat die konstitutionalisierung des Völkerrechts noch eine Chance*, p.156.

⁵⁹⁾ Rainer Schmalz-Bruns, "An den Grenzen der Entstaatlichung, -Bemerkung zu Jürgen Habermas 'Modell einer Weltinnenpolitik ohne Weltregierung'", Peter Niesen/Benjamin Herforth(Hg.), *Anarchie der Kommunikativen Freiheit*, Frankfurt. a. M. 2007, p.269.

시민법의 전개양상과는 다르게 등장했다. 국민국가들이 지배하던 세계는 세계 사회의 탈국민국가적 정황으로 이행해 가고 있다. 국민국가들은 세계사회의 수평적 조직망에 엎어 들어감으로써 부분적 자율성을 상실해 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시민적 질서라는 칸트의 프로젝트가 단지 전통적으로 이에 대해 거부하고 법보다 권력에 사회 존재론적 우위를 부여하는 현실주의자들의 반대 논리에만 직면하게 된 것은 아니다.⁶¹⁾ 하버마스는 세계정부 없는 계획은 폭력 전제국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가적 질을 담보하지 않는 정치적 다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세계정부 없는 세계 내 정책”은 민주적인 세계 사회 안에서 UNO는 평화보장, 인권 그리고 환경의 실존적 상황으로부터 강력한 초국가적 방향에 집중한다.⁶²⁾ 다층적 체계는 초국가적 수준에서 유엔현장의 목표인 평화와 인권을 달성하고 다국적 수준에서는 주요 강대국들 간의 타협을 통해 세계의 내정 문제를 다룬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정부 없는 세계정부 체계의 구상은 세계공화국에 대한 개념적 대안을 설명하고자 할 뿐이다. 세계조직의 틀 속에서 평화와 인권을 실현하는 권력을 갖춘 “세계정부 없는 세계적 내정”에 대한 생각은 세계공화국이나 만민 국가의 칸트적 프로젝트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는 아니다. 칸트는 자신의 세계시민적 상태(Weltbürgerlicher Zustand)라는 개념으로 전적으로 국가에만 집중된 국제법을 넘어서는 결정적 발걸음을 내딛고자 했다. 그 이후로 국제법은 단지 전문적인 법 분과로 발전하는데서 종결된 것은 아니었다. 제1,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에 국제법의 입법화는 칸트가 제시한 노선에 따라 세계시민법으로 진화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국제적인 헌법과 조직, 그리고 절차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⁶³⁾ 세계정부 없는 지구적 통치의 지지자들은 국가들 사이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협상체계들에서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세계정부는 국민국가를 넘어서 있지만, 세계국가수준의 밀자리에 정주하게 되었다.⁶⁴⁾ 단지 세계정부는 세계적 규모로 확대된 입헌국가만으로 “세계시민적 상태”를 위해 필요한 추상적 요건들을 충족할 수 없다. 세계공화국

60) Rainer Schmalz-Brunns, 앞의 책, p.276.

61) Jürgen Habermas, *Hat die konstitutionalisierung des Völkerrechts noch eine Chance*, p.114.

62) Stefan Müller-Doohm, *Jürgen Habermas. Ein Biographie*, Frankfurt. a.M. 2014, p.485.

63) Jürgen Habermas, *Hat der Konstitutionalisierung des Volkerrechts noch eine Chance*, p.114.

64) Michael Zürn, *Regieren jenseits Nationalstaates*, Frankfurt. M. 1998.

의 모델은 단지 국제법으로부터 세계시민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련의 단계들을 잘못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된 입헌국 가라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⁶⁵⁾ 하버마스의 관점에서 칸트의 세계시민적 상태는 시민권과 인권을 국가적 수준에서, 그리고 국제적 수준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요구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이념이 혁신하고자 하는 핵심은 국제법을 세계시민법으로 변혁하고자 했다. 이제 개인들은 더 이상 그들 국가의 법적 주체로서 시민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지도부를 둔 세계시민적 공동체의 성원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⁶⁶⁾

하버마스는 세계시민적 상태의 확보 이유를 논증한다: “왜냐하면 세계시민적 상태를 확보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침해를 직접적으로 도덕적 관점 아래 판단하여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법질서 안에서 범죄행위를 취급하듯이, 그렇게 판단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국제관계에 대한 일관된 법제화는 갈등해소 절차를 확립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야 말로 법이 도덕으로 탈분화되는 것을 억제하고 인권침해를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법이 매개요인 없이 확산되어 가는 외국인에 대한 도덕적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이런 상태 역시 세계국가의 폭력독점과 세계정부 없이는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입법재판소의 구속력 있는 판결, 세계시민을 대표하는 하원수준에 의해 정부대표들로 이루어진 총회를 보충하는 것이 필요로 한다.”⁶⁷⁾

영구평화는 세계시민적 상태의 중요한 특징일 수 있지만, 단지 어떤 상태의 징후에 불과하다. 칸트가 해결해야 하는 개념적 문제는 세계시민적 상태의 법적 개념화였다. 하버마스에게 있어서 세계시민법과 고전적 국제법의 차이는 세계시민법을 특수성으로 간주한다. 자연 상태에서 모든 법이 국제법의 시효에 유효한 반면, 세계시민법은 국가적으로 승인된 법과 같이 자연상태를 최종적으로 종식시키고자 한다. 이런 깊이에 하버마스는 세계시민적 상태로 이행하고자 했던 칸트의 주장을 특정 국가의 사회계약을 구성한다. 그리고 하버마스는 국가의 시민들에게 법률적으로 보장된 자유를 생활 속에서 가능하게 하는 자연상태로의

⁶⁵⁾ Jürgen Habermas, *Hat die konstitutionalisierung des Völkerrechts noch eine Chance*, p.135.

⁶⁶⁾ Jürgen Habermas, 위의 책, p.123.

⁶⁷⁾ Jürgen Habermas, *Zeit der Übergänge*, Frankfurt. a. M. 2001, p.60.

유사한 비유를 적용한다.⁶⁸⁾ 말하자면 하버마스가 보기에 칸트의 세계시민적 상태는 국가들의 개별 시민들처럼 상위 권력의 공적 강제법률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립성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국내의 법 상태와 구별되어야 한다. 즉 하버마스의 관점에서 칸트의 세계시민적 상태는 상호 교류하는 가운데 전쟁 수단을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자유국들의 예견된 연합을 회원국들 사이에 주권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⁶⁹⁾

이는 국가 간 관계의 변화된 성격 및 주권국가의 행동반경의 규범적 제한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되는 근본개념들의 수정은 국제연합과 세계시민적 상태의 구상에 대해 중요한 결과를 미친다. 그동안 까다로운 규범들은 세계시민적 상태를 부분적으로 고려해 왔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세계상황을 국제법에서 세계시민법으로 이행해 가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⁷⁰⁾ 이런 관점에서 하버마스는 칸트의 국가 간 자연상태의 세계시민적 평정의 이념을 시대에 맞게 재정식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상황은 유엔의 개혁을 위한 일반적으로 지구의 여러 지역에서 초국가적 행위능력의 구축을 위한 온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시민적 상태는 인권을 국제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정치의 자기 파괴적 도덕화의 시도로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7. 맷음 말: 세계시민권과 세계시민주의의 현대적 의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권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우리는 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권을 현대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재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제도권의 공교육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개인으로서 또는 세계시민과 민주적 시민으로서 사회정의에 대해 깊이 숙고할 수 있게 가르침으로써 보다 건전한 사회와 폭넓은 세계를 지향하는 효과적인 제도적 활동방식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 세계시민권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될 수도 있는 “국가적 정체성이나 다른 정체성에 호소하는 주장”들을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결

⁶⁸⁾ Jürgen Habermas, *Die Einbeziehung des Anderen*, p.195.

⁶⁹⁾ Jürgen Habermas, *Die Einbeziehung des Anderen*, p.196.

⁷⁰⁾ Jürgen Habermas, *Die Einbeziehung des Anderen*, p.213.

론”을 지지한다는 점에 대해서 다소 우려를 표명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버마스의 “모든 집단적 정체성은 유럽에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탈민족적 정체성이라 할지라도 그 정체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덕적이고 법적이며, 정치적인 원리들의 총체보다 훨씬 더 구체적”⁷¹⁾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세계시민과 세계시민권이 국가의 맥락에서 벗어났을 경우, 그다지 커다란 의미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세계시민권이 시민으로서 서로에게 무한한 책임감을 부여받아 상이한 입장들을 첨예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라나는 모든 청소년들은 민족, 종교, 성인, 종 혹은 계급에 관계없이 자기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을 위한 사회 정의의 증진에 기여하는 민주사회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함께 협의하는 과정을 배워야 한다. 따라서 제도권 공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민주적 시민권에 좌우되지 않는 세계시민으로서의 도덕성과 사회정의의 요구들을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둘째, 세계시민주의와 보편주의자의 올바른 인식을 통해 세계시민주의가 지향해 나갈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주지하듯이, 세계주민주의는 보편주의자와 구분된다. 보편주의자는 모두를 문제 삼는다. 반면 세계시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쓰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거나 자기들과 동등해기를 바라기 때문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 예컨대 보편주의자는 “나는 당신이 내 형제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형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세계시민은 “나는 비유적인 의미에서 당신의 형제, 당신의 동료 시민이고 싶다. 그러나 우리가 평등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지 않겠다.”고 종종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시민주의와 비슷한 종류의 보편주의도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어떤 문화적 전통이나 집단에게도 특권을 부여하지 말라는 보편주의의 명령이 있다. 이 명령은 모든 사람을 평등한 존재, 완전한 공정성, 개인에게 집착하지 않는 보편주의이다. 세계시민주의는 모두를 문제 삼으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서로 다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시민주의라고 스스로 칭하는 보편주의도 있다. 보편주의는 지나치게 엄격하다. 세계시민주의는 무매개적이어서 “그 실천적 불가능성”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정치의 현실은 세계시민주의가 공허한 관념에 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세계시민적 보편주의가 모든 특수한 정체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특수한 정체성이 보편적 가치의 생성과 실현을 위한 기초가

⁷¹⁾ J. Habermas, *Die Nachholende Revolution*, pp.149–150.

된다.” 이런 이유로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세계정부 없는 세계시민”은 우주의 떠돌이나 마찬가지 처지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점점 다국적·초국적 교류가 확대되는 세상에 살고 있고 강대국의 여전한 횡포에도 불구하고 일방주의가 점점 통하지 않는 지구적 정치과정을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한다. 초국적 비정부기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것이 지난 실천적 힘도 커져가고 있다. 세계정부가 없다고 해서 세계시민적 정체성, 혹은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운동이 이상주의적이라는 상식적 비판은 논리의 비약일 수 있다. 민족주의가 국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적어도 국가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인류적 정체성, 즉 내가 인류 공동체의 한 성원이라는 의식도 세계정부 없이 가능하다. 그것이 공허하게 들린다면, 사실상 애국주의나 민족주의의 경우도 모두 마찬가지일 수 있다.

셋째, 민주주의 정치의 단계적 구상이 민주적 공동체, 영토, 세계시민주의에 대해 각각 어떻게 민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먼저 민주적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동등한 시민권을 존중해야 한다. 여기서 이러한 권리는 공동체의 내용과 외연에서 지속적인 수정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민주적 공동체는 각각의 영토에서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개별적인 영토에서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인정한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인권을 민주적으로 자기 자신을 통치하는 그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모든 세계시민의 정당한 요구로서 존중한다.⁷²⁾ 여기서 민주주의의 인권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어떤 경계를 허물어뜨릴 세계시민주의를 위해 진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는 민주주의에 보다 공(功)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⁷³⁾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경우에, 인권을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적 경계선이 중요할지라도 개개인의 정의를 위해 민주적 시민권의 역량과 덕성을 길러 주어야 한다. 주지하듯이, 사회정의의 요구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은 민주적 시민권의 핵심 덕목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차적으로 민주적 시민권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세계 전역에서 정의를 증진시킬 수 있기 있기 때문이다. 세계시민주의의 대안은 일차적인 충정의 대상이 세계 인류 공동체라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한 공동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인간은 세계 도처에

72) Christop Menke/Arnd Pollmann, 앞의 책, p.187.

73) Christop Menke/Arnd Pollmann, 앞의 책, p.188.

살고 있고, 권리와 정의의 원리에 따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공동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면, 민주적 인본주의들의 견해에 동의하는 것이 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과는 다르게 누구든지 정의의 의무를 통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정의의 의무는 도덕적, 정치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특히 민주적 시민권이 무엇 때문에 도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적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정치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개인으로서 윤리의 의무를 넘어선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세계시민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될 경우, 정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됨에 따라 정의의 증진을 위해 행동할 책임의식을 더욱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세계시민은 세계 정의의 본질적 요구이며, 세계전역에서 개인들은 세계를 인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먼저 근본적인 도덕적 충정은 공동체에서 그리고 사회 어느 곳에 속해 있는 인류공동체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도덕적 충정은 정의, 즉 올바른 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일 수 있다. 또한 민주적 시민들은 개인들이나 세계시민에 의해 제도적 수단들을 재량껏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존엄에 대한 존중,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은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양립 가능한 필요한 조건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의로운 민주사회로 구성된 조직은 정의 구현의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이는 민주국가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을 기회를 모든 개인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상대방이 내가 힘으로 제압해야 하는 적대자가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살고 있고, 같이 살아야 하는 동료시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상대방에게 도덕적 수치심을 주면서 내 생각에 동의하라는 것은 오히려 적대감을 가중시킬 뿐이다.⁷⁴⁾ 우리는 서로 설득시켜 나갈 수 있는 공감의 지점들을 찾아내고, 다소 어려움에 부딪칠지라도 이를 확인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계시민이란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 시민적 절제와 원칙에 기반한 타협, 자신이 주장한 것이나 행동에서 가져 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사려 깊음이다.

74) 곽준혁, 「공화주의와 인권」, 『정치사상연구』, 제15집, 1호, pp.176-180.

참고문헌

1. 김정현, 「글로벌리즘에 대한 철학적 성찰 – ‘자아 정체성’을 중심으로 –」, 『범한 철학』, 제67집, 범한철학회, 2012.
2. 김지현·손철성, 「세계시민주의,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시대와 철학』, 제20권 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9.
3. 김진, 「하버마스와 테러시대의 정치신학」, 『철학연구』, 제103집, 철학연구회, 2013.
4. 너스봄, 마사,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논쟁』, 삼인, 2003.
5. 벡, 울리히, 『세계화시대의 권력과 대항권력』, 홍찬숙 옮김, 길, 2011.
6. 비롤리, 모리치오, 『공화주의』, 김경희·김동규 옮김, 인간사랑, 2006.
7. 양해람, 「한국사회에서 공화주의의 이념은 부활할 수 있는가?」, 『시대와 철학』, 제19권 1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8.
8. 장은주, 『인권의 철학』, 새물결, 2010.
9. 하버마스, 위르겐, 이질성의 포용, 황태연 옮김, 나남출판,
10. K. A. Appiah, 『세계시민주의』, 실천철학연구회 옮김, 바이북스, 2008.
11. Beck, Ulrich, *Power in the Global Age: A new political economy*, trans. by Kathleen Cross, Cambridge: Polity Press, 2005.
12. Habermas, Jürgen, *Die Einbeziehung des Anderen*, Frankfurt. a. M., 1996,
13. _____, *Die Nachholende Revolution*, Frankfurt. a.M. 1990.
14. _____, Hat der Konstitutionalisierung des Volkerrechts noch eine Chance, *Der gespaltene Westen*, Frankfurt. a. M. 2004.
15. _____, *Politische Texte*. Band.4. Frnkfurt. a. M. 2009.
16. _____, *Zur Verfassung Europas Ein Essay*, Suhrkamp, 2012.
17. _____, *Zeit der Übergänge*, Frankfurt. a. M. 2001.
18. Höffe, Otfried, *Demokratie im Zeitalter der Globalisierung*, München, 2002.
19. Horkheimer, Max. "Traditional and Critical Theory," in *Critical Theory: Selected Essays*, New York: Continuum, 2002.
20. Jaspers, Karl, *The Question of German Guilt, Perspectives in Continental Philosophy* No. 16 ,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00.
21. Kant, Immanuel, *Zum ewigen Frieden*, Frankfurt a. M. 1977.
22. _____, "Toward Perpetual Peace", *Practical Philosophy*, trans. and edited by M. J. Gregor, Cambridge University, 1996
23. Menke, Christop/Pollmann, Arnd, *Philosophie der Menschenrechte zur Einführung*, Hamburg, 2012,

24. Müller, Jan-Werner, *Verfassungspatriotismus*, Frankfurt. a. M, 2010.
25. _____, *Constitutional Patriotism*, Princeton: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26. Müller-Doohm, Stefan *Jürgen Habermas. Ein Biographie*, Frnkfurt. a.M. 2014.
27. Niesen/Herborth(Hg.), *Anarche der kpmmunikativen Freiheit*, Frankfurt. a. M. 2007.
28. Schmalz-Brunn, Rainer, "An den Grenzen der Entstaatlichung, -Bemerkung zu Jürgen Habermas 'Modell einer Weltinnenpolitik ohne Weltregierung'", Peter Niesen/Benjamin Herborth(Hg.), *Anarchie der Kommunikativen Freiheit*, Frankfurt. a. M. 2007.
29. Fine, Robert and Smith, Will, "Jürgen Habermas's Theory of Cosmopolitanism", *Constellations*, vol. 10.No.4. 2003, 469–487쪽.
30. Wieland, Christoph Martin, "Das Geheimniß des kos mopolitienordens," *Deutscher Merkur*, August 1788.
31. Voltaire, *Essai sur les moeurs et l'esprit des nations*, vol.16, 1784.
32. Zürn, Michael, *Regieren jenseits Nationalstaates*, Frankfurt. M. 1998.

【Abstract】

Cosmopolitanism and Cosmopolitan Right - focusing on Habermas' Arguments

Yang, Hae-Rim(Chungnam Natl. Univ.)

Definitions and history of cosmopolitanism can be traced back as far as political philosophy. Cosmopolitanism can be traced back to Cynics of ancient Greece between the 4th to 5th centuries BC. The term 'cosmopolitanism', which was invented in ancient Greece, still has been universally applicable today.

Cosmopolitanism is a subject that a wide variety of philosophers and politicians from the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France in Europe, and Korea have discussed. Above all, we are living in a world like a global village where common knowledge of the world is created with active exchanges of ethno-national, religious traditions being promoted, and where the spirit is evoked to acknowledge differences of others, and the conversion of a unilateral point of view into a cosmopolitan insight is required more than ever. A cosmopolitan point of view means that we should respect the dignity of cultural others along with each individual's understanding of the survival. For this point, cosmopolitanism dates back to a great idea of European Modernity, which outstrips what has been historically worn out such as Tribalism, Communism, Socialism, and Neoliberalism.

Habermas stresses the founding of a united European nation in which a variety of citizens participate to pursue coexistence as a universal principle, based on self-understanding of republican, constitutional patriotism.

A constitutional patriotism that is implicitly premised on rational agreements by communicative actions is a critical basis for creation of a new cosmopolitan order. In his essay *"Perpetual Peace"*, Kant argues that international law should be transformed into cosmopolitan right because a cosmopolitan right represents the legal relations among people who can be regarded as citizens of a universal human nation whereas a conventional international law is related to interrelations among

sovereign nation-states, Habermas observes that the classical international legal order, suggested by Kant 200 years ago, implies the possibilities of being transformed into a cosmopolitan legal order. Kant insisted that members of the cosmopolitan legal order be constitutional republics. Therefore, the origins and definitions of cosmopolitanism, cosmopolitanism and constitutional patriotism, cosmopolitan right, a political world order and cosmopolitan right, world policies without a global government, and a cosmopolitan status will be investigated in this study.

Keywords: Cosmopolitanism, Cosmopolitan Right, Habermas, Kant, Constitutional Patriotism, Cosmopolitan Republic

- ▣ 이 논문은 2014년 11월 14일 접수되고
2014년 12월 03일 심사 완료되어
2014년 12월 10일 게재가 확정되었습니다.